

사건번호	2021허6054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21원1929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직류 모터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출원발명(보정에 의한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중 특정 문단번호의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 1항 등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아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보정서 및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판시 요지

-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모터에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출력이 큰 모터를 제공하는 발명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동일한 전압에서 회전판의 수가 1개 → 2개 → 3개 → 4개로 1개씩 증가하는 경우 모터에 입력되는 전류는 1.5A → 0.75A → 5A → 0.35A로 낮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회전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회전판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큰 힘이 필요한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회전판의 수가 많은 경우 모터에 입력되는 전력(= 전류 × 전압)이 낮음에도 오히려 출력토크(돌림힘, 회전력)는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떻게 원고가 주장하는 작용효과(모터에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출력이 큰 모터를 제공)를 갖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3개의 회전판과 3개의 정류자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소비전력이 감소하더라도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터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출력이 큰 모터라는 것이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직류 모터

사건번호	2022허1285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20당282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Giverny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Giverny**)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판시 요지

- (1) 원고는 화장품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03년경 처음 출시된 화장품 브랜드인 “GIVERNY” 및 “지베르니”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지베르니로부터 양도받은 다음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여 왔고, 현재 까지 다수의 백화점 및 면세점 등과 같은 유통판매업체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선사용상표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검색란에 ‘지베르니’를 입력하면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등과 같은 다수의 선사용상표 상품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고,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도 선사용상표 상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2009년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선사용상표 상품으로 약 330억원에 달하는 국내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국내외 박람회에 수차례 참여하거나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사용상표 상품을 홍보하여 왔고, 선사용상표와 관련된 브랜드는 CEO 경영전문 매거진인 ‘인사이트 코리아’에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1위 브랜드 선정되었다는 원고 대표이사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선사용상표들 이외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베르니 밀착**”,

“ **GIVERNY MILCHAK** ”을 포함한 다수의 상표를 등록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① ‘Giverny(지베르니)’는 프랑스 오토노르망디 주 외르 데파르트망에 위치한 파리 근교의 마을로서,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가 작품활동을 하거나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또한 유통 판매업체와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지베르니(GIVERNY)’가 이른바 ‘모네의 정원’으로 유명한 위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 점, ③ “지베르니”가 다양한 업종에서 상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19년경 선사용상표 상품을 통하여 달성한 매출액의 규모가 국내 화장품산업의 총생산규모, 특히 색조화장품류의 매출액 기준으로 0.2015%에 불과한 점, 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의 선사용상표 상품의 판매순위는 카테고리의 기준을 ‘메이크업 상품’ 카테고리가 아닌 ‘스킨케어’ 혹은 ‘바디케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체 판매랭킹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는 물론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등록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저명상표,

Giverny

사건번호	2020허6910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9당337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22. 8. 26.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0.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및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 11, 12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371호로 심리한 다음, 2020. 9.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10, 11, 12호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요부는, 양 표장이 ‘BOON THE(분더)’ 부분이 공통되는 점, 나머지 ‘KITCHEN(키친)’, ‘SHOP(샵)’ 부분은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낮은 점, ‘BOON’은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영단어가 아닌 점,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BOON THE’는 도치되어 있고,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인 점, ‘BOON THE’가 어두에 위치하는 점, 양 표장이 유사한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54%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그 이유로 ‘분더(BOON THE) 부분이 공통되어서’라는 취지로 다수의 응답자가 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BOON THE(분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각 요부인 ‘BOON THE’ 부분의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분더’로 호칭이 동일하며,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차, 레몬 등 과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럽’ 등으로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서 제공되는 상품으로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 점,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유사 여부, 요부, 설문조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분더키친, 분더샵, BOON THE KITCHEN, BOON THE SHOP

사건번호	2020허6927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9당3372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22. 8. 26.	선고결과	인용

2020허6910 사건 참조

사건번호	2020허5648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1당690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급속동결기의 서리제거장치용 회전노즐
선고일	2022. 8. 26.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2756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7. 17.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2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나사산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선행발명 2에는 구성요소 3의 내주면 나사산 및 제한턱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압력 유체(流體)를 분사하는 노즐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위 차이점들의 기술적 의의는 회전식 유체 분사장치에서 회전체를 본체에 회전 가능하게 나사 결합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원형의 두 물체를 결합함에 있어서 볼트, 너트의 암수 형태로 결합하는 나사결합 수단이나 오(o)링에 의하여 결합하는 수단은 모두 공지된 기술이므로, 어떠한 결합 수단을 채택할 것인지는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점, 너트의 결합 깊이를 제한하기 위해 너트 내주면 일단에 나사산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너트의 형상변경 등을 통해 너트의 결합 깊이를 제한하는 것은 쉽게 착안할 수 있는 점, 회전분사체의 회전시, 회전분사체와 결합링체가 서로 접촉하여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분사체와 결합링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그 사이에 베어링 등의 구성을 하는 것 역시 기술상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급속동결기의 서리제거장치용 회전노즐

사건번호	2022허1728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21당660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마스크
선고일	2022. 8. 26.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8. 25.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660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1. 12.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밀착공부가 결합된 위치 및 방향(차이점 1),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형성되는지 여부(차이점 2)에 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발명은 ‘마스크본체에 상부밀착공, 하부밀착공 및 끈당김이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마감부의 내측에 걸림밴드를 내장하여 위 마감부를 필터지에 부착함으로써 요홈으로 걸림밴드의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기술사상, 즉 걸림밴드를 필터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림밴드의 길이를 요홈을 통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어 위 기술사상은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위와 같이 공지된 이상, 이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차이점 1, 2의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후면에 결합된 이 사건 발명과 달리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지 않아 마스크와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 매끈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차이점 1), 확인대상발명은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연결되어 있어 상·하부밀착공이 한 번에 형성될 수 있는 점에서 밀착공부의 제조공정이 간이화되는 점(차이점 2) 등에서 이 사건 발명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 마스크

사건번호	2021허4874	사건명	등록무효(실)
심판번호	2020당3407	심판결과	각하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실용신안	권리명칭	난방용 온수 분배장치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정정고안과 선행고안을 대비해볼 때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원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1. 16.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고안이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은 등록고안의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청구항 1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3407 사건으로 심리한 후, 제1항 정정고안은 선행고안 6, 7, 8 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제1항 정정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정정고안의 구성요소 3은 난방배관의 재질을 동파이프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고안 2는 난방배관의 재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그러나 난방배관의 재질을 동파이프로 한정하는 구성의 기술적 의의는, T자 연결배관을 동파이프로 함으로써 '용접'에 의하여 난방배관과 연결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속 소재의 파이프를 상호 연결하는 방법으로 '용접'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난방배관을 동파이프로 한정함으로써 용접에 의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파이프가 난방용 배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 중 하나라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 상식에 속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선행고안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진보성, 난방용 온수 분배장치

사건번호	2021허6405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20원283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광전 복합케이블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출원발명의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례

●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20. 원고에게 출원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 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출원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에 금속보호층의 제조방법에 관한 구성 및 복수의 전력선 유닛 중 적어도 하나의 전력선 유닛의 절연체는 주름골에 의해 눌러 변형이 발생하는 구성을 부가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광전 복합케이블'에 관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나.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분야 및 목적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전력공급을 포함하는 산업용 케이블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지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내부의 전력선 유닛 등이 외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다.

다.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대비

제1항 출원발명의 전제부는 원격무선유닛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선행발명 1의 전제부는 광통신

망유닛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아울러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케이블 코어의 외경을 D_c , 금속보호층의 주름산의 내경을 D_o , 금속보호층의 주름골의 내경을 D_i 라 할 때, $D_i < D_c \leq D_o$ 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들의 관계를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관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차이점 2). 또한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는 파이프 형의 금속보호층을 프레싱하여 금속보호층의 주름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코어에 포함된 전력선 유닛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름골에 의하여 눌러 그 절연체에 변형이 생긴 것인데, 선행발명 1은 금속 시스 내부의 소재가 주름골에 눌러 변형되었는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에 대해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제1항 출원발명의 전제부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2, 3의 경우 선행발명과 대비해 볼 때 목적과 기능이 공통되며 선행발명의 구성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광전 복합케이블

사건번호	2020 허 3713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9 당 1422	심판결과	인용(정정 인정, 특허 무효)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배관용 분기관부재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정정발명 청구항들이 모두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422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그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정정발명 제1항 내지 제5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3. 30.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되, 제1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정을 인정하고, 특허발명의 특허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발명자인 피고가 특허발명을 주식회사 S(이하 'S')에게, S는 원고에게 각 유상 양도 했으므로 원고 및 S에 대하여 피고가 특허발명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 회사 역시 피고와 밀접·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자 최초 특허권자인 신OO(피고의 동생)이 특허발명의 발명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가거나, 특허발명은 피고가 그 동생인 신OO의 명의를 빌려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출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S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특허발명의 실질적 발명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특허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S가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나 피고 회사가 양도인으로서 특허권의 유효성을 묵시적으로나마 보증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S가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당시 S와 피고 회사 사이 합의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S 주식 전부를 김OO(S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S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금 정산을 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나 피고 회사가 S의 원고에 대한 특허권 양도에 관여하거나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회사의 특허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2) 정정발명 청구항들의 진보성 여부

정정발명 청구항 1은 분기관이 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냉간단조와 스웨이징공법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여 분기관의 제조방법을 명시적으로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복합분기관이 단조품으로 제작된

다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하광상협의 형상을 가지는 복합분기관을 단조품으로 제작할 때 파이프 형상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파이프 형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특허발명 출원 당시 특허발명이 속하는 금속가공 분야에서 열간단조, 냉간단조 및 스웨이징공법은 주지관용기술로서 각각의 장·단점은 물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가공물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도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제작비용 및 필요한 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공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정정발명 청구항 1은 '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냉간단조와 스웨이징공법에 의한다'는 제조방법에 관한 한정이 부가된 '물건 발명'인데,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작용효과는 단조가공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징점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정정발명 청구항 2 내지 5도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무효심판청구 적법성 인정, 진보성 부정, 배관용 분기관부재, 배관용 배관부재

사건번호	2021 허 6399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20 당 2395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XXZXX()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0 호(신의칙에 위반한 상표 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상표 사용의사 없이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사용상표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용상품 : 의류, 모자)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모자, 머니벨트(의류), 벨트, 유아동복,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머플러, 운동복, 재킷, 예복, 원피스, 잠바, 속옷, 우의, 방한용 마스크(의류), 양말, 비치웨어, 한복

●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20당2395호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2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무효사유 주장을 하지 않았다..

● 판시 요지

원고는 "원고는 2018. 2.경부터 피고에게 의류 생산을 위임하면서 그에 따라 생산될 의류에 사용될 선사용상표를 개발·선정하는 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의류의 품질을 관리하며, 선사용상표의 사용을 통제하는 등 등록상표를 사용한 주체이므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2.경부터 피고와 공동으로 선사용상표를 개발·사용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예비적 주장). 이처럼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계약 또는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록상표를 단독으로 출원하였는바,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귀속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사용상표를 선점하여 원고의 상표출원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양도대가를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다."라고 각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피고는 피고 남편과 공동으로 2012. 5. 1.경부터 '디사이드키즈(Decide kids)'라는 상호로 아동복(의류, 잡화)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동복 등을 의류생산업체를 통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 2) 원고는 2014. 8. 4.경부터 '원대물류' 또는 '와이디 무역(YD무역)', 'WHYD' 또는 'K-POP' 등의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국내에서 아동복 등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여 왔다.
- 3)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원고가 생산을 희망하는 의류 샘플을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그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원고는 중국에서, 피고는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 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생산되는 의류에 사용될 브랜드로 선사용상표가 2018. 5.경 채택되었다.
-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중국에서 '한국 "XXZXX" 브랜드 아동복 제품 국내(중국 내를 말한다) 단독 판매 총대리점'이라는 지위에서 중국 의류업체에 판매하여 왔다.
- 6) 피고도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국내 의류소매상에 판매하여 왔다.
- 7) 피고는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등록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8) 원고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인 2019. 3. 15. 중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아동복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21. 5. 7. 상표등록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선사용상표 사용 의류를 피고가 생산하여 이를 중국에서는 원고가, 국내에서는 피고가 각각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선사용상표에 대하여 국내에서 피고 명의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원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선사용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국내에서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선사용상표 사용 의류의 디자인 및 생산에 일부 관여하였다거나, 선사용상표의 개발에 관여하고 최종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부정, 상표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 부정, 의류, 아동복

사건번호	2021 허 6535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20 당 239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XXZXX()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0 호(신의칙에 위반한 상표 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상표 사용의사 없이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사용상표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용상품 : 의류, 모자)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지갑, 핸드백, 배낭, 가죽제 열쇠지갑, 소형가방, 여행용 가방, 우산,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가죽제 또는 인조가죽제 상자, 여행가방용 가죽제 라벨홀더, 가죽 및 모조가죽, 스포츠 가방, 아동용 가방, 에코백, 카드지갑, 파라솔 및 지팡이, 애완동물용 가방, 마구(馬具), 아기띠

● 사건 개요 및 판시요지

2021허6399 사건 참조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부정, 상표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 부정, 의류, 아동복

사건번호	2021 허 6542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20 당 239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XXZXX()
선고일	2022. 8. 25.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0 호(신의칙에 위반한 상표 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상표 사용의사 없이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사용상표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용상품 : 의류, 모자)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의류 도매업, 가방 도매업, 신발 도매업, 신발소매업, 지갑 판매대행업, 속옷 도매업,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도매업, 양말 도매업, 비치웨어 판매대행업,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소매업, 모자 판매대행업, 가방 소매업, 의류용 벨트 소매업, 방한용 장갑 소매업, 스카프 도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판매대행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 판매대행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가방 판매대행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신발 판매대행업

● 사건 개요 및 판시요지

2021허6399 사건 참조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부정, 상표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 부정, 의류, 아동복

사건번호	2022 허 1421	사건명	거절결정(상)
심판번호	2021 원 232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WAXCO()
선고일	2022. 8. 18.	선고결과	인용

출원상표는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3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선사용상표

WAXCO

●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광택용 왁스"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경제적 건련성이 있어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2020원2328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 말레이시아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원고는, ① 선사용상표가 말레이시아에서 '광택용 왁스'와 관련하여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점, ②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각 표장이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원고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또는 선사용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위 선사용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선사용상표가 말레이시아 내 일반 수요자에게는 선사용권자의 상품인 '광택용 왁스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표장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하 '쟁점 상품')의 매출액과 그 광고비의 규모, 쟁점 상품 고객들의 현황과 아울러 국내에서의 쟁점 상품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 저명하거나 특정인의 표장이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2) 영문자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는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 이른바 조어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선사용상표 중 'WAX' 부분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광택 및 세척용 왁스)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직감되는 관념이 위 사용상품의 성질이나 재료 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또한,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그 출원일 무렵까지 어떠한 상품명 뒤에 영어 'CO'를 결합하여 '~CO'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국내에서 다수 출원되어 등록되었던 사정에다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보급수준과 실제 거래사회의 사용실태 및 선사용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선사용상표 중 'CO' 부분은 어떠한 단어 뒤에 붙여 회사를 의미하는 'Corporation' 내지 'Company'의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선사용상표는 그 창작성이 뛰어난 조어상표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3)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와 선사용상표의 선사용권자 사이에 출원상표 또는 선사용상표를 둘러싼 어떠한 교섭이나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원고는 1987. 10. 23.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49-1에서 '대동산업'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제조업', 종목을 '의료용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치과보철물 제작 및 치과진료에 사용하는 재료인 막대형 치과용 왁스와 같은 치과용품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5)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상품류 구분 제5류의 치과용 왁스 등)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광택 및 세척용 왁스'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상품의 종류, 속성, 생산·유통·판매 부문 및 그 주된 수요자 등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각 상품 사이의 경제적 견련관계의 밀접성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 6) 선사용상표의 선사용권자가 선사용상표의 표장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업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부정한 목적 부정, 치과용 왁스, 광택 및 세척용 왁스, 조어상표의 창작성, 상표를 둘러싼 교섭관계, 선사용상표의 국내에서의 인지도